

#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7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촉직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중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종전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근거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시행령으로 정한 것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로 개정함
- 나.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중 '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사항'을 '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'으로 개정함
- 다.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임기만료 후의 절차가 미흡하여 재위촉 및 연임 여부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.

## 3. 관계법령

- 가.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
- 나.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

##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”를 “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”로 한다

제2조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제2호를 “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제3조 제2항 “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</u>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하구 토지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</u>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한다.</p>
<p>제 2 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<u>2.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.</u></p>	<p>제 2 조(심의사항)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</p> <p><u>2.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 3 조(위원회구성) ①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<u>2년으로 한다</u>                      ③~⑤(생략).</p>	<p>제 3 조(위원회구성) ①(현행과 같음.)                      ②………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<u>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③~⑤(현행과 같음.)</p>